
교 통 국

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사 업 설 명 서

교 통 과



(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) (P - 9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01. ~ 2019. 12
- 위 치 : 김포운수(122대), 선진상운(74대), 선진운수(210대)
- 사업규모 : 김포시 시내버스 48대(1차분), 401대(2차분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의 증진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8,428	100,800	-37,740		-54,632		
국 비			50,400	-50,400				
도 비								
시 비		8,428	50,400	12,660		-54,632	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협조요청(경기도 버스정책과-16,913호)
-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준공연기로 인한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일부 미집행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정보통신망법)	제14조
근거내용	제14조(인터넷 이용의 확산)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, 지역 별·성별·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의결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						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‘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’을 기초로 2018년 하반기 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임.
- 관내 시내버스(406대)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 및 통신비에 대한 지원 사업임.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공 통		= -54,632	
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	201-02 공공운영비	· 통신요금 감액 - 시비 : 54,632,000원 = -54,632	시비50% ※국비50% (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직접집행)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07. :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 사업자 선정(과기부)
- 2019.09. :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장비 설치
- 2019.12. :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준공 및 운영개시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	
2018년	-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1차분(48대) 설치완료	
2019년	-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1차분(48대)에 대한 통신요금은 19.6월부터 집행 -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2차분(401대)에 대한 준공이 연기됨에 따라 통신비용 미집행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-	-	-	-	
2018년	5,760	-	-	-	사업미실시로 불용처리
2019년	63,060	7,328	-	55,732	11.2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교통과	교통정보팀장 신동진	담당자	방송통신8급 이용구	전화	5923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(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) (P - 9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01. ~ 2019. 12.
- 위 치 : 김포운수(32대),선진상운(32대),선진운수(135대)
- 사업규모 : 김포시 광역급행버스 199대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의 증진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0	119,400			-119,400		
국 비								
도 비		0	35,820			-35,820		
시 비		0	83,580			-83,580	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협조요청(경기도 버스정책과-16,913호)
-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준공연기로 인한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미집행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정보통신망법)	제14조
근거내용	제14조(인터넷 이용의 확산)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, 지역 별·성별·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						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‘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’을 기초로 2018년 하반기 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임.
- 관내 광역급행버스(199대)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 및 통신비에 대한 지원 사업임.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공 통		= -119,400	
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	201-02 공공운영비	통신요금 감액 - 도비 : 35,820,000원 - 시비 : 83,580,000원 = -35,820 = -83,580	도비30% 시비70%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07. :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 사업자 선정(과기부)
- 2019.09. :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장비 설치
- 2019.12. :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준공 및 운영개시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	
2018년		
2019년	미실시 (사업자 준공이 '19. 7월에서 '19. 12월로 늦춰진 관계로 예산 감액)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-	-	-	-	
2018년	-	-	-	-	
2019년	119,400	-	-	119,400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교통과	교통정보팀장 신동진	담당자	방송통신8급 이용구	전화	5923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(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(국비)) (P - 9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1. ~ 2020. 06.
- 사업규모 :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 구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340,000	172,000			168,000	340,000	
국 비		84,000				84,000	84,000	
도 비		68,800	68,800				68,800	
시 비		187,200	103,200			84,000	187,20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 구입 비용
 - ※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위탁·운영(김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	제16조 제1항 및 제2항
근거내용	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의결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- ※ 2019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차량 4대를 증차 완료하였으며, 국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2020년으로 명시 이월 후 차량 4대 추가구입 예정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(국비)	405-01 자산및물품취득비	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: 42,000,000원 × 4대 = 168,000	카니발 저상형 장애인차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08. : 국고보조금 확정내시
- 2019.11. :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
- 2019.11. : 2019년 3회 추경예산 편성 및 명시이월
- 2020.04. : 사업집행(차량구매-조달청)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- 특별교통수단 차량 8대 구입(국비 50%, 시비 50%)	
2018년	- 해당없음	
2019년	-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 구입(도비 40%, 시비 60%)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330,570	327,833	-	2,737	
2018년	해	당	없	음	
2019년	172,000	165,962	-	6,038	11.30까지 집행현황 (도비 보조사업)
	168,000	-	168,000	-	11.30까지 집행현황 (국비 보조사업)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교통과	교통물류정책팀장 김영은	담당자	행정6급 김주혁	전화	2464
-----	-----	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) (P - 159)

-교통사업특별회계-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1. ~ 2019. 12.
- 위 치 : 사우동 847-5번지 외 2개소
- 사업규모 : 공영주차장 2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및 재계약을 추진하여 공영주차장의 지속 운영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3,509,777	3,344,710	2,105,066	1,198,644		41,000	-165,067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3,509,777	3,344,710	2,105,066	1,198,644		41,000	-165,067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사우동 행복나눔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대부료 및 변상금, 고촌 노상 공영주차장 재계약 추진에 따른 사용료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사우동 행복나눔 공영주차장
 - 위치 : 사우동 847-5
 - 대부면적(일반재산) : 167㎡
 - 사우동 행복나눔 공영주차장 조성(2019.5월 준공) 부지 내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가 일부 포함
공영주차장 지속적 사용을 위한 연간 대부료 및 변상금(2019.5.24~11.6.)
- 고촌읍 노상 공영주차장
 - 위치 : 고촌읍 신곡리 532-87 외 1필지
 - 사용면적(행정재산) : 2,000㎡
 -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 내 조성된 노상 공영주차장 계약을 위한 연간 사용료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공 통		41,000	
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	사무관리비 (201-01)	· 사우동 행복나눔 공영주차장 부지 계약(167㎡) = 8,000 · 고촌 노상주차장 부지 계약(2,000㎡) = 29,000	
	배상금등 (305-01)	· 사우동 행복나눔 공영주차장 변상금 = 4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09~2019.11 : 관련기관 협의 및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허가 추진계획 수립
- 2019.12. : 사용허가 계약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- 투자사업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.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, 시설관리공단 전출금	
2018년	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, 시설관리공단 전출금	
2019년	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, 시설관리공단 전출금	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17년	3,812,349	2,930,580	394,100	487,669	
2018년	3,903,877	3,115,320	679,722	108,835	
2019년	3,983,432	3,830,004	-	-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교통과	주차시설팀장 임종구	담당자	시설8급 김승환	전화	2330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장기5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) (P - 159)

-교통사업특별회계-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0. ~ 2021. 8.
- 사업규모 : 자주식 주차장 건립(3,043㎡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자주식주차장 건립을 통한 인근 주차난 및 불법주정차 해소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2,225,000			1,250,000	1,000,000	2,225,000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	2,225,000			1,250,000	1,000,000	2,225,00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2019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지에 따른 장기5 자주식 주차장 건립 공사비 편성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반영	대상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2018.11	2019.4	2019.3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장기동 수변상가 지역 방문객들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 증대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공 통		1,000,000	
장기5 자주식 주차장 건립	401-01 시설비	· 장기5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 = 1,00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 12. :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
- 2020. 8 : 공사 착공
- 2021. 8 : 공사 준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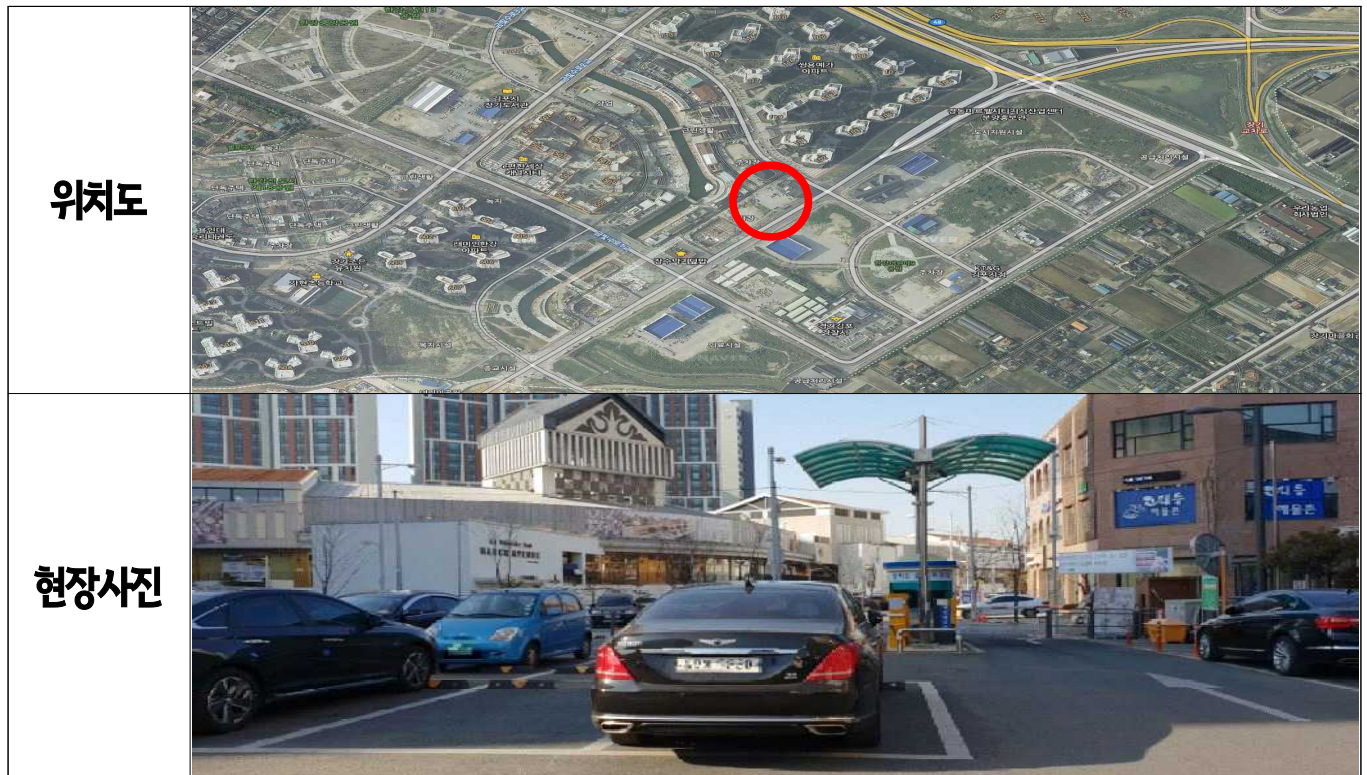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- 투자사업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.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- 신규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.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교통과	주차시설팀장 임종구	담당자	시설8급 김승환	전화	2330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사업설명서

대중교통과



(한파저감을 위한 버스정류소 내 온열의자 설치(성립전)) (P - 97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1. ~ 2020. 3.
- 위 치 : 마산동 639-4, 풍무동 808, 감정동 693번지 일원
- 사업규모 : 온열의자 3개 설치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여 한파저감시설(온열의자) 설치를 통해 대중교통이용 시민편의 증진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310,000	943,740	250,000	550,000	136,000	7,740	633,740	
국 비								
도 비		7,740				7,740	7,740	
시 비	310,000	936,000	250,000	550,000	136,000		626,000	
기 타							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- 한파저감시설 설치관련 도비 내시로 인하여 올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함(성립전예산 반영 완료)(도비 100%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	제12조 제3호
근거내용	제12조(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3.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·개선	

근거법령	자연재해대책법	제3조
근거내용	제3조(책무)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,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관리계획	학술용역비사전심사	정보화사업사전협의	민간위탁의회의동의	출연·출자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 내시를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한파저감을 위한 버스정류소 내 온열의자 설치	401-01 시설비	온열의자 : 2,580,000원*3개 = 7,740	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총사업비 (A+B+G)	기투자 (A)	2019년 예산액					향후투자 (G)	비고
	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310,000	943,740	250,000	550,000	136,000	7,740	509,000	
공 정 별	설계비		37,967	6,030	23,366	8,571		60,000	
	보상비								
	공사비	310,000	905,773	243,970	526,634	127,429	7,740	449,000	
	감리비								
	부대비								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법적절차 이행상황부터 준공일 까지 자세히 작성)

- 2019. 10. : 한파저감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및 성립전예산 편성
- 2019. 11. : 물품구매
- 2019. 12. : 설치완료 및 전기연결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- 반도유보라2차 버스정류소 외 환승거점형 정류소 1개소 신설 - 양촌읍 지남마을 버스정류소 외 48개소 이설 및 신설 - 장기동 호반아파트 버스정류소 외 사각표지판형 정류소 58개소 설치 이설 및 신설 - 사우동 장릉입구 버스정류소 외 P형표지판 정류소 9개소 설치 - 운양동, 걸포동 외 5개 읍면동 내 버스정류소 71개소 조명시설 설치	
2018년	- 사우동 문화체육공원앞 버스정류소 외 쉼터형 정류소 15개소 이설, 신설 및 철거 - 반도유보라정문 버스정류소 외 사각표지판형 정류소 19개소 이설 및 신설 - 고막저수지입구 버스정류소 외 P형표지판 정류소 14개소 이설, 신설 및 철거 - 운양동, 걸포동 외 8개 읍면동 내 버스정류소 36개소 조명시설 설치	
2019년	- 구래동 이편한세상.한강아이파크 버스정류소 외 쉼터형 정류소 51개소 철거, 이설, 보수 및 신설 - 사우동 풍년마을 버스정류소 외 사각표지판형 정류소 8개소 이설 및 철거 - 통진읍 서암초교앞 버스정류소 외 P형표지판 정류소 50개소 설치 및 이설 - 북변동 외 읍면동 내 버스정류소 40개소 조명시설 설치 및 교체 14개소 버스정류소 내 발열의자 18개 설치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예산현액 (이월액 포함)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470,000	461,220	-	8,780	
2018년	310,000	227,412	60,000	22,588	
2019년	1,238,740	393,644	279,625	565,471	연말까지 약 80% 집행예정

※ 2019년 예산현액에는 학운리 일원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이월액(235,000천원) 포함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치도
10,000 :1
이상
(칼라)



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대중교통과	버스운영팀장 채재열	담당자	시설8급 문나연	전화	245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저상버스 도입보조) (P - 97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2. ~ 2020. 1.
- 사업규모 : 저상버스 7대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장애인, 노약자 어린이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1,924,398	1,747,392	824,742	94,938	183,936	643,776	-352,608	
국 비	962,199	873,696	412,371	47,469	91,968	321,888	-176,304	
도 비	144,333	131,062	61,857	7,123	13,796	48,286	-26,438	
시 비	817,866	742,634	350,514	40,346	78,172	273,602	-149,866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저상버스 7대 추가 도입에 따른 예산 편성(국 50% 도 7.5% 시 42.5%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	제14조 제4항
근거내용	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(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의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반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2018.12월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비장애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확보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
- 구입비용 91,968천원/대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저상버스 도입보조	402-02 민간자본사업보조	○ 저상버스 7대 × 91,968천원 = 643,776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 10. :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((기존)12대→(변경)19대 / 7대 증)
- 2019. 12. ~ 1. : 저상버스 도입 보조(7대)
- 2020. 1. : 사업 정산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- 2017. 4월 : 10대 도입(33번) - 2017. 6월 : 10대 도입(33번)	
2018년	- 2018. 1~8월 : 50대 도입(60번, 1002번, 33번, 2번) - 2018. 12월 : 10대 도입 (60번)	
2019년	- 2019. 1월 : 4대 도입(60번) - 2019. 3월 : 4대 도입(60번) - 2019. 5월 : 2대 도입(60번) - 2019. 7월 : 8대 도입(90-1번) - 2019. 11월 : 2대 도입(90-1번) - 2019. 12. ~ 2020. 1. : 7대 도입예정(81-1번 4대, 841번 3대)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이월액 포함)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6,284,398	1,953,160	4,331,238	-	
2018년	6,255,636	5,522,532	733,104	-	
2019년	2,480,496	1,836,720	643,776	-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대중교통과	재정지원팀장 박민수	담당자	행정7급 조나영	전화	5916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) (P - 97)

□ 지방보조사업 개요(사업비)

- 사업기간 : 2019. 1. ~ 12.
- 공모여부 : 비공모
- 보조사업자 : 마을버스 9개 업체
- 대표자 : 박봉수 외 8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손실재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
마을버스 이용자에 대한 상시교통 수단 확보 및 지역주민 편의 제공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1,746,000	1,900,000	1,800,000			100,000	154,000	
시 비	1,746,000	1,900,000	1,800,000			100,000	154,000	
자부담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운송원가 상승 및 노선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대수 증가, 도시철도 개통으로 인한 승객수 및 수입금 감소에 따른 손실재정지원 증가로 예산 증액 편성(시비 100%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	제50조 제2항 제15조 제3호 제2조 제1,2호
근거내용	제50조(재정 지원) ② 시·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(재정지원)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. 다만,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·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·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.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제2조(재정지원)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(이하 “운수사업자”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1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.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	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결과 운송원가 상승 및 노선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대수 증가
-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승객 수 및 수입금 감소로 손실재정지원 예산 증액 편성
- 시내버스가 경유할 수 없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심 세부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중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노선 손실금 일부 재정지원을 통하여,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 고		
		계	시비	자부담	
	총 계	100,000	100,000		
마을버스 손실재정 지원	307-09 운수업계보조금	합 계	100,000	100,000	
		· 운송원가 증가(925천원) *12개월 * 9개월	100,000	100,000	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- 보조사업자 : 마을버스 10개 업체 - 추진실적 : 1,542,935천원 지원	
2018년	- 보조사업자 : 마을버스 9개 업체 - 추진실적 : 1,670,622천원 지원	
2019년	- 보조사업자 : 마을버스 9개 업체 - 추진실적 : 1,648,883천원 지원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			집행액			집행잔액			비고
	계	시비	자부담	계	시비	자부담	계	시비	자부담	
2017년	1,598,395	1,598,395		1,542,935	1,542,935		55,460	55,460		
2018년	1,746,000	1,746,000		1,670,622	1,670,622		75,378	75,378		
2019년	1,900,000	1,900,000		1,648,883	1,648,883		251,117	251,117		연말까지 100% 집행예정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대중교통과	재정지원팀장 박민수	담당자	행정7급 류효녀	전화	591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사 업 설 명 서

안전총괄과



안전도시 조성 (P - 98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0. ○ 위 치 : 해당없음
- 사업량 : 안전도시 워크숍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지역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도 향상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추진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2,800	0	2,800			-2,800	-2,800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2,800	0	2,800			-2,800	-2,80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 운영으로 행사 취소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	제66조의 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
근거내용	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관계자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(안전문화 및 체험 우수기관 벤치마킹)하고자 하였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 운영으로 행사 취소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		비 고
안전도시 조성	201-03 행사운영비	- 안전도시 추진 워크숍 · 임차료 400,000원 * 1회 · 강사료 430,000원 * 2명 · 홍보비(물품구입 등) 900,000원	=	0	행사취소
	301-09 행사실비보상금	- 워크숍 급식비 : 8,000원 * 80명 * 1회	=	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2. :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공유
- 2020.03.~04. : 워크숍 계획 수립 및 추진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-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(4회)	
2018년	- 신규사업 발굴 및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(2회)	
2019년	- 재난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계획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3,060	2,060	-	100	
2018년	2,800	2,249	-	551	
2019년	2,800	-	-	2,800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안전총괄과	사회재난팀장 채낙중	담당자	행정7급 양승우	전화	2910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(P - 98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05.
- 사업규모 :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대비 훈련 실시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3,860	0	3,860			-3,860	0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3,860	0	3,860			-3,860	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제외대상기관 결정
(도 안전기획과-16931('19.10.11.)호 및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-2907('19.10.10.)호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	법 제35조, 동법 시행령 43조의14
근거내용	행정안전부장관,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(이하 "훈련주관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 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(재난대비훈련 실시)에 따른 재난대응 훈련 운영비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제외대상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 취소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 고
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	201-01 사무관리비	·장비대여 : 500,000원*3대 = 0	사업취소
		·훈련소모품 구입 : 360,000원*1회 = 0	
	301-09 행사실비지원금	·훈련참가자 급식비 : 8,000원*250명*1회 = 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 10. 11. :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제외 결정 (도 안전기획과-16931('19.10.11.)호)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○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- 기 간 : 2017.10.30. - 참여 : 김포시 및 유관기관 - 훈련내용 :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훈련	
2018년	○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- 기 간 : 2018.05.17 - 참여 : 김포시 및 유관기관 - 훈련내용 :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대피훈련	
2019년	○ 긴급구조 종합훈련 계획 - 기 간 : 2019.10.31 - 참여 : 김포시 및 유관기관 - 훈련내용 : 지진에 의한 열차화재 및 건물붕괴 ○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제외 결정에 따라 긴급구조 종합훈련 취소 ('19.10.11.)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3,900	3,900	-	-	
2018년	3,860	3,860	-	-	
2019년	3,860	-	-	3,860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안전총괄과	사회재난팀장 채낙중	담당자	행정8급 김영섭	전화	2912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- 사업기간 : 2016. 01. ~ 2020. 12.
- 위 치 : 김포시 걸포동 155-4번지 일원
- 사업규모 : 나진교 55m 재 가설(2.6m충상) / 도로선형개선 500m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상습 침수 교량 재해 예방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7,200,000	2,525,000	2,200,000			325,000	4,675,000	
국 비	3,600,000	1,262,500	1,100,000			162,500	2,337,500	
도 비	540,000	189,375	165,000			24,375	350,625	
시 비	3,060,000	1,073,125	935,000			138,125	1,986,875	
기 타								

- 봉성 자연재해위험지구(봉성3펌프장신설)와 지구간 사업비 조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
- 감리비 집행 잔액 70백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집행 잔액 최소화

근거법령	자연재해대책법	제13조
근거내용	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(이하 "정비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관리계획	학술용역비사전심사	정보화사업사전협의	민간위탁의회의동의	출연·출자회의의결
경상□	자본■	반영	해당없음	비대상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17.11.	-	-	-	-	-	-

- 총 사업비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감리비 70백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집행
-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G)	기투자 (A)	2019년 예산액					향후투자 (G)	비고
	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19,325,000	16,800,000	2,525,000	2,200,000			325,000	-	
공 정 별	설 계비	230,000	230,000					-	
	보상비	3,757,000	3,757,000					-	
	공 사비	14,068,000	11,673,000	2,395,000	2,000,000		395,000	-	
	감리비	1,230,000	1,100,000	130,000	200,000		-70,000	-	
	부대비	40,000	40,000					-	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법적절차 이행상황부터 준공일 까지 자세히 작성)

- 2015.03.31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(김포시 고시 제2015-48호)
- 2015.07.09 제3차(16년~20년)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확정
- 2017.01.16 사전설계심의 완료(국민안전처)
- 2017.05.19 경기도 계약심사완료
- 2017.09.11 나진교 재가설공사 착공
- 2020.09.30 나진교 재가설공사 준공 예정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- 2017. 1 : 국민안전처 사전설계심의 완료 - 2017. 9 : 나진교 재가설 공사 착공	
2018년	- 2018. 4 : 손실보상 협의 실시 - 2018. 9 : 검문소 철거 및 지장물 이설	
2019년	- 2019. 2 : 서울방향 상행선 교량 철거 완료 - 2019. 11 : 상행선 서울방향 임시 개통 / 하행선 강화방향 교량 철거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9,443,309	6,895,225	2,548,084	-	
2018년	9,748,083	3,602,780	6,145,303	-	
2019년	8,345,303	5,496,226	2,849,077	-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치도
10,000 : 1
이상
(칼라)

현장사진
(칼라)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안전총괄과	하천관리팀장 조상덕	담당자	시설7급 최영문	전화	2921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보성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(P - 99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6. 01. ~ 2022. 12. ○ 위 치 : 양촌읍 누산리 1073번지 일원
○ 사업규모 : 배수펌프장 신설(103.5㎥/s, 구경2,200mm×8대)
○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한강신도시 및 봉성포천유역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2,000,000	7,207,000	7,532,000			-325,000	5,207,000	
국 비	1,000,000	3,603,500	3,766,000			-162,500	2,603,500	
도 비	150,000	540,525	564,900			-24,375	390,525	
시 비	850,000	3,062,975	3,201,100			-138,125	2,212,975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나진 자연재해위험지구(나진교재가설)와 지구간 사업비 조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자연재해대책법	제13조
근거내용	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2조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(이하 "정비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반영	해당없음	비대상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17.11.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배수펌프장 신설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
 - ※ 수혜도 : 1,860세대 6,561명, 건물300동(시가지,농경지 1,421ha)
-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G)	기투자 (A)	2019년 예산액					향후투자 (G)	비고
	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48,000,000	2,000,000	7,207,000	7,532,000			-325,000	38,793,000	
공 정 별	설 계비	1,500,000	1,500,000						
	보상비	3,000,000	500,000	2,500,000	2,500,000				
	공 사비	41,450,000		4,707,000	5,032,000		-325,000	36,743,000	
	감리비	2,000,000						2,000,000	
	부대비	50,000						50,000	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법적절차 이행상황부터 준공일 까지 자세히 작성)

- 2012. 11. 25. : 자연재해위험지구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
- 2015. 03. 31. : 봉성재해위험지구지정(취약방재시설지구 / 나등급)
- 2018. 05. 17. :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
- 2019. 04. 11. : 행정안전부 기본설계심의 조건부 통과
- 2019. 12. : 행정안전부 실시설계심의 신청
- 2020. 05. : 공사 착공
- 2022. 12. : 사업 완료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·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	
2019년	· 행정안전부 기본설계심의 조건부 통과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18년	2,000,000	1,067,253	932,747	-	
2019년	7,532,000	24,200	7,507,800	-	계속비사업 실시설계중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치도
10,000 :1
이상
(칼라)



현장사진 (칼라)

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안전총괄과	하천관리팀장 조상덕	담당자	시설7급 최영문	전화	2921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태풍(링링)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(성립전) (P - 99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09. ~ 12.
- 사업규모 : 장비임차, 배수로 준설 및 관로 정비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태풍에 따른 공공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기 완료로 시민의 불편 최소화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30,000	30,000				30,000	30,000	
국 비								
도 비	30,000	30,000				30,000	30,000	
시 비							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재원으로 제13호 태풍 ‘링링’ 에 따른 공공피해시설 응급복구비 지원.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자연재해대책법	제46조 제1항
근거내용	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제13호 태풍 ‘링링’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[경기도 자연재난과-17616(2019.9.10.) 회]
- 공공피해시설(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관리시설)의 응급복구 및 잔존물 철거에 소요되는 장비 임차료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응급복구 조기 완료로 시민의 불편 최소화.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태풍(링링)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	시설비 (401-01)	○ 응급복구 긴급지원 = 30,000 · 전도수목 처리 장비임차 1식 = 13,000 · 배수로 준설 및 관로 정비 1식 = 17,000	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G)	기투자 (A)	2019년 예산액				향후투자 (G)	비고
	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
계	30,000		30,000				30,000	
공 정 별	설 계비							
	보상비							
	공사비	30,000	30,000				30,000	
	감리비							
	부대비							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09.10. : 경기도 보조금(재난관리기금) 자금교부
- 2019.09.20. : 성립전 예산 편성 완료
- 2019.10.04. : 태풍(링링) 피해 복구계획 수립 및 자금 재배정(양촌읍)
- 2019.11.~12. : 공사착공 및 준공
- 2020.01. : 사업정산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- 양촌읍 일원 전도수목 제거 장비임차, 배수로 준설 및 관로정비 1식	재배정 (양촌읍)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- 해당없음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안전총괄과	자연재난팀장 오현철	담당자	행정8급 박지수	전화	2915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 (P - 99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0 ~ 12. ○ 위 치 : 김포시 전역
- 사업규모 : 주택 전·반파 3건, 농림시설 193건, 농작물 1,562건 등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
: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피해주민들의 긴급생활 지원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1,368,000				1,368,000	1,368,000	
국 비		684,000				684,000	684,000	
도 비		273,600				273,600	273,600	
시 비		410,400				410,400	410,40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 국·도비보조금 교부예 따라 예산증액 사유 발생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	제4조 제1항
근거내용	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. 주택이 소파(小破,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·반파(半破)·전파(全破)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·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나. 주생계 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관리계획	학술용역비사전심사	정보화사업사전협의	민간위탁의회의동의	출연·출자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 국·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
[경기도 자연재난과-20823(2019.10.22.)호]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	302-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	주택, 농작물 등 사유재산피해 1,766건 재난지원금 지급 = 1,368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0월 : 재난지원금 선지급 완료
- 2019.11월 : 선지급금 과목경정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-재난지수 300이상 피해 지원 선지급금 (807명) : 1,351,000,000원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- 해당없음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안전총괄과	자연재난팀장 오현철	담당자	행정8급 박지수	전화	2915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배수펌프장 정비사업(성립전) (P - 100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0. ~ 2020. 03. ○ 위 치 : 걸포배수펌프장
- 사업규모 : 배수펌프 1대, 수배전반 1식, 제진기 1대, 자동제어 시스템 1식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집중호우 시 즉각적인 펌프장 운영으로 주민들의 침수피해 최소화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435,800	2,150,000	1,150,000			1,000,000	1,714,200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435,800	2,150,000	1,150,000			1,000,000	1,714,200	특교세
기 타							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- 2019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결정(10억원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하천법	제2조(정의), 제4조(하천관리의 원칙)
근거내용	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배수펌프장, 수문 등 하천수위조절을 위한 시설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써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☐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2019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결정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 고
걸포배수펌프장 정비사업	401-01 시설비	배수펌프(190KW×1대),특고압,저압 수배전반, 로터리식 제진기 1대, 자동제어 시스템 1식 = 1,00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계획수립,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)

- 2019.10~2019.11 : 공사 설계 및 발주
- 2019.11 ~2020.02 : 사업진행
- 2020.03 : 공사완료 및 시운전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· 봉성2 배수펌프장 옥상 방수 및 준설공사 · 봉성1 배수펌프장 배전반 교체 · 석탄 및 굴포 배수펌프장 입축사류(축류)펌프 교체 · 봉성2 배수펌프장 옥상 환경개선 공사 · 굴포 및 향산 배수펌프장 집수정 준설 · 운양배수펌프장 진입로 포장 및 오탁방지망 이설공사 · 향산3 배수펌프장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	
2018년	· 운양 배수펌프장 게이트 펌프 보수공사 · 석탄 및 포내 배수펌프장 옥상 방수공사 · 운양, 봉성1, 향산3 배수펌프장 LED 전광판 설치 및 제진설비 보수공사 · 배수펌프장 영상감시장치(CCTV) 및 축전지 교체공사	
2019년	· 배수펌프장 조명 개선공사 · 석탄배수펌프장 제진설비 성능 개선공사 · 석탄 및 굴포 배수펌프장 입축사류(축류)펌프 교체 · 향산2 배수펌프장 외 2개소 환경개선 공사 · 제촌 배수펌프장 집수정 준설 · 통진읍 도사리 침수방지 대책사업 · 노을 간이펌프장 시설 개선사업 · 굴포 배수펌프장 외 3개소 환경개선 공사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1,664,014	1,579,994	-	84,020	배수펌프장 정비, 교체, 준설 포함
2018년	1,322,670	566,398	700,000	56,272	명시이월
2019년	2,150,000	1,698,364	421,000	30,636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안전총괄과	방재시설팀장 김중훈	담당자	공업7급 송태현	전화	2601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사업설명서

도로건설과



(애기봉 평화생태공원 ~ 태산패밀리파크간 도로 개설사업) (P - 10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 ~ 2023
- 사업규모 : L=4.3km, B=12m(2차로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,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활성화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2,550,000				2,550,000	2,550,000	
국 비		2,040,000				2,040,000	2,040,000	
도 비								
시 비		510,000				510,000	510,00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행안부 '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' 선정 및 국비지원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	제88조 및 제96조
근거내용	제88조 도로개설 관련 실시계획 인가 제96조 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반영	적정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2018.11월	2019.11월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,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활성화 도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 고
애기봉 ~ 태산패밀리파크간 도로 개설사업	401-01 시설비	· 도로개설 L=4.3km, B=12m(2차로) 설계용역비 = 1,000,000 · 보상비 = 1,550,000	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G)	기투자 (A)	2019년 예산액				향후투자 (G)	비고
	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
계	24,550,000		2,550,000				2,550,000	22,000,000
공 정 별	설 계비	1,000,000	1,000,000				1,000,000	
	보 상비	7,500,000	1,550,000				1,550,000	5,950,000
	공 사비	15,400,000						15,400,000
	감 리비	650,000						650,000
	부 대비							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법적절차 이행상황부터 준공일 까지 자세히 작성)

- 2018. 04. : 2019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청(문화관광과→행정안전부)
- 2018. 05. : 2019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
- 2019. 11. : 중앙투자심사완료
- 2020. ~ : 설계용역 추진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	
2018년	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청 및 선정	문화관광과
2019년	투자심사 완료	문화관광과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-	-	-	-	
2018년	-	-	-	-	
2019년	-	-	-	-	11.30까지 집행현황

부서명	도로건설과	도로건설1팀장 이영종	담당자	시설8급 오선경	전화	2437
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김포 도시계획도로(소로2-20호선) 개설사업 (P - 101)

□ 사업개

- 사업기간 : 2019. ~ 2022.
- 위 치 : 김포시 사우동 202-2번지 일원
- 사업규모 : L=0.2km, B=8m(2차로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,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2,020,000		20,000		2,000,000	2,020,000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	2,020,000		20,000		2,000,000	2,020,000	
기 타							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-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상비를 확보하여 적기에 사업 추진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	제88조 및 제96조
근거내용	제88조 도로개설 관련 실시계획 인가 제96조 사업부지 보상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반영	적정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2018.11월	2019.11월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교통 불편사항 및 민원사항의 해소가 필요한 실정임.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김포도시계획도로 (소로2-20호선) 개설사업	401-01 시설비	· 도로개설 L=0.2km, B=8m(2차로) 보상비 = 1,990,000	
	401-03 시설부대비	· 보상관련 공고료 및 수수료 = 1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11. : 2019년 도로건설사업 추진 계획 수립
- 2018.12. :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
- 2019.04. :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
- 2019.12. : 실시계획인가
- 2020.06. : 보상 착수
- 2021.03. : 공사 착공
- 2022.02. : 공사 준공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G)	기투자 (A)	2019년 예산액				향후투자 (G)	비고
	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
계	3,600,000		2,020,000		20,000		2,000,000	1,580,000
공 정 별	설계비	20,000	20,000		20,000			
	보상비	1,990,000	1,990,000				1,990,000	
	공사비	1,580,000						1,580,000
	감리비							
	부대비	10,000	10,000				10,000	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- 해당없음	
2018년	- 기본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	
2019년	- 설계용역 추진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				
2018년					
2019년	20,000	19,000	1,000	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도로건설과	도로건설2팀장 이강제	담당자	시설9급 임승범	전화	2458
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마을회관 관리) (P - 101)

□ 지방보조사업 개요(사업비)

- 사업기간 : 2019. 01. ~ 2019. 12.
- 공모여부 : 비공모 (사유 4호)
- 보조사업자 : 유현1리 마을회 대표자 : 유현1리장 이병노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마을회관 환경개선으로 주민편의 및 복지 제공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397,000	110,000	200,000		110,000	-200,000	-237,000	
시 비	347,000	110,000	200,000		110,000	-200,000	-237,000	
자부담	50,000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유현1리 마을회에서 자부담금 확보의 지남함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포기 신청
추후 조례개정으로 자부담 없이 지방보조금 재심의를 권고 하였으나 마을회에서 신청을 포기함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	제4조, 제6조
근거내용	김포시장은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역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신축, 증축, 재건축 또는 보수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	

☐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유현리 마을회 보조금 지원사업 포기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자 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 고
마을회관 관리	402-01 민간자본사업보조	도사4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= 30,000	
	402-01 민간자본사업보조	양곡7리 마을회관 보수공사[담장공사] = 14,000	
	402-01 민간자본사업보조	누산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[리모델링] = 30,000	
	402-01 민간자본사업보조	구래4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[방수공사] = 21,000	
	402-01 민간자본사업보조	흥신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[지붕공사] = 15,000	
	합 계	110,000	
	402-01 민간자본사업보조	유현1리 마을회관 개축공사 -200,000	예산감액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가현2리 마을회관 유지보수 외 18개소	
2018년	가현3리 마을회관 유지보수 외 10개소	
2019년	도사4리 마을회관 외 4개소 보수공사 추진 중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			집행액			집행잔액			비고
	계	시비	자부담	계	시비	자부담	계	시비	자부담	
2017년	599,116	541,686	57,430	394,425	337,038	57,388	204,690	204,648	42	
2018년	397,000	347,000	50,000	365,739	317,210	48,529	31,261	29,790	1,471	
2019년	310,000	310,000	0	0	0	0	310,000	310,000	0	11.30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도로건설과	지역개발팀장 임종필	담당자	시설9급 육성준	전화	2431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사우1교 재가설 공사) (P - 102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2. ~ 2020. 05.
- 위 치 : 김포시 금파로169번길 119
- 사업규모 : 교량 재가설 1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정밀안전점검 결과 D급 교량의 확장 재가설로 안전성 및 영농편의 개선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400,000				400,000	400,000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	400,000				400,000	400,000	특교세
기 타							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- 2019년 재난특별교부세 신규 사업임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지방교부세법	제9조 제1항 제2호
근거내용	제9조(특별교부세의 교부)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. 2.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: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심의	공유재산관리계획	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	민간위탁의회의동의	출연·출자회의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노후된 교량으로 작성 안전을 위하여 재가설이 필요함
- 현재 교량 폭이 협소하여 대형 농기계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, 확장 재가설 될 경우 영농편의 개선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 고
사우1교 재가설 공사	401-01 시설비	. 계 = 400,000 . 실시설계비 = 20,000 . 준공사비 = 210,000 . 자재비 = 150,000 . 폐기물처리비 = 2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07. : 특별교부세 사업대상지 제출
- 2019.10. : 특별교부세 교부
- 2019.11. : 사우교 재가설 사전협의(농촌공사)
- 2019.12. ~ 2020.02 : 실시설계
- 2019.03. ~ 2020.05 : 공사추진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 (A+B+G)	기투자 (A)	2019년 예산액				향후투자 (G)	비고
	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
계	400,000		400,000				400,000	
공 정 별	설계비	20,000	20,000				20,000	
	보상비							
	공사비	380,000	380,000				380,000	
	감리비							
	부대비							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해 당 없 음	
2018년	해 당 없 음	
2019년	해 당 없 음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해당없음				
2018년	해당없음				
2019년	400,000	-	400,000(명시)	-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치도 10,000 :1 이상 (칼라)	
현장사진 (칼라)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도로건설과	지역개발팀장 임종필	담당자	시설7급 조현식	전화	2429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